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65호(號) 1931(昭和 6)년 3월 27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84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0(昭和 6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3월 2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(部) 「석유(石油), 등유(燈油: 위험품[危險品])。휘발유(揮發油)」의 항(項)의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	동(同)	진 주(晋州)	동(同)	2할(割) 감(減)

동(同) 「군수품(軍需品)。군소유품(軍所有品)」의 항(項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각 급 품(各級品)(화약류[火藥類]를 제[除]함)	부산(釜山),초량(草梁), 부산진(釜山鎭)	북마산(北馬山)·진주(晋州) 간(間) 각(各) 역(驛)	소화물급(小貨物扱)	3할(割) 감(減)	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4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